

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5~42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5. 8.
제출자	거창군수

■ 개정사유

- 2005. 7. 1 조직개편으로 본청의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와 통합됨으로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농업관련 위원이 배제되어 있음.
- 우리군은 농업군으로 농업정책의 의견제시와 방향설정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관련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

■ 주요골자

-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에서 농업관련 부서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·구성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2조 제3항)

■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제2항제1호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”를 “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3항중 “각 실과장”을 “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하며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	<p>제2조(구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 장으로 하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